PRUGIO

판교 퍼스트힐 푸르지오 A1BL 입주자 모집공고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주자모집공고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본 아파트는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오니, 아래의 사항을 참조하시어 청약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8.12.13.(목)입니다.(무주택기간, 나이, 지역 우선 등의 청약자격 조건 판단 기준일입니다.)
-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일반 및 특별공급 모두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청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결제원(www.apt2you.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청약신청 안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은 「주택법」 제63조 1항의 규정에 의한 투기과열지구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1항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입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57조1항에 따른 분양가 상한제가 미적용되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입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5조에 의거 주택건설지역인 경기도는 물론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까지 확대하여 공급합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8.12.13.) 현재 주택건설지역인 성남시에 거주하거나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성남시를 제외한)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만19세 이상인자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인, 외국국적동포) 및 외국인 포함]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동일 신청자격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주택건설지역(성남시)에 1년 이상 거주(외국에 거주한 기간은 제외)하는 신청자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성남시 1년 미만 거주자)에 거주하는 신청자보다 우선하여 공급하며,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성남시 1년 미만 거주자) 거주자로 신청하신 분은 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에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2018.12.13.) 현재 성남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외국에 거주한 기간 제외)한 성년자에게 우선 공급하오나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당해지역으로 청약 신청 시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바랍니다. (기타지역으로 청약 신청 가능)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의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본인과 세대원 주택소유"를 점수로 계산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 가점제"가 적용됩니다.(분당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주택형 85㎡이하 주택은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가점제가 적용되어 입주자를 우선 선정함.) ※ 본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 1순위 접수 시 무주택자(세대주)는 가점제, 1주택 소유한 세대(분양권등포함)에 속한 자(세대주)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함.(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분류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1항 및 제26조의2 제1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 대상 주택수의 100퍼센트(소수점이하는 절상한다)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투기과열지구는 80%이상 선정)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APT2you 홈페이지(www.apt2you.com)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2항에 의거 일반공급 주택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가점제를 적용하여 선정하며,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하고 남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합니다.(동·호수 배정 후 미계약시 당첨자로 관리됨) ※ 신청한 가점점수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가점점수가 다음 순위의 예비입주자의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다음 순위의 예비입주자 점수와 비교하여 동점이거나 더 낮은 경우에는 예비입주자 선정이 취소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도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선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각 주택형별 특별공급 종류별로 입주자를 선정 ② ①번에서 입주자선정 후 남는 세대가 있는 경우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③ ②번 이후에도 낙첨자가 발생한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특별공급세대수의 100% 이내 예비입주자를 선정
  ④ 특별공급 세대수의 1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하고, ②번 선정 후에도 잔여 물량이 있는 경우 일반공급세대수로 전환함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금융결제원에서 실시합니다.
- 중복 청약접수, 이중당첨 관련 유의사항
  -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타주택 포함)에 대하여 중복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이중당첨 또는 재당첨제한으로 모두 부적격처리됨. 단, 특별공급 인터넷청약 개편으로 인한 당첨자발표일 일원화로 동일단지에 한하여 특별공급을 신청한 자가 일반공급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공급유형을 달리한 신청(특별공급+일반공급)은 예외적으로 인정하나 특별공급 당첨시 일반공급 신청은 무효(제외)처리함.
  - 또한, 특별공급을 신청한 자의 세대구성원[세대주인 배우자 또는 세대분리된 배우자(세대주)]이 일반공급 자격요건을 갖추어 공급유형을 달리한 신청[신청자(특별공급)+배우자(일반공급)]으로 모두 당첨된 경우 특별공급 당첨은 인정하나 일반공급 당첨(배우자)은 부적격처리됨. - 상기 특별공급 당첨자발표일 일원화로 인한 예외사항 외 청약자(세대주)와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가 동일 공급유형으로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타주택 포함)에 각각 청약(특별공급+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일반공급)하여 모두 당첨되는 경우 모두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됨 -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다른 주택에 각각 청약하여 모두 당첨이 되면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주택의 당첨만 인정함.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각각 동일한 청약통장 사용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본 아파트는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재당첨 제한)」이 적용되오니, 아래 사항을 참조하시어 청약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 1순위 자격 제한(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포함) :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전지역 해당), 2주택(분양권·입주권 포함) 이상을 소유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청약 불가함.(2순위로 청약 가능) - 재당첨 제한(특별공급 및 1, 2순위 해당)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및 과거 청약과열지역에서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자 및 세대에 속한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으로 제47조의3에 따른 당첨자의 경우 청약자 및 그 배우자만 해당)는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된 자 및 세대에 속한자는 당첨 주택형별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민영주택인 경우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주택법」 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에 따라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재개발, 재건축 주택에 대하여 해당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 지역(직장 포함)주택조합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일 당시 입주 대상자로 확정된 자는 1순위 자격제한이 적용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단, 관리처분계획인가,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입주권을 획득한자는 제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 : 규칙 제3조 제2항 제1호, 제2호, 제4호, 제6호, 제6호의2, 제7호가목(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 한정), 제8호 및 제47조에 따라 이전기관 종사자 등에 특별공급되는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당첨자의 재당첨 제한기간 : 과밀억제권역 85㎡이하 – 당첨일로부터 5년, 85㎡초과 – 당첨일로부터 3년 /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85㎡이하 – 당첨일로부터 3년, 85㎡초과 – 당첨일로부터 1년
    ※ 청약과열지역 : 서울시·과천시·광명시·성남시·고양시·남양주시·하남시·화성시(동탄2에 한함)·구리시·안양시 동안구·광교택지개발지구·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
    부산 해운대구·연제구·동래구·남구·수영구·부산진구·기장군(일광면에 한함)
    ※ 투기과열지구 : 서울시·경기도 과천시·성남시 분당구·광명시·하남시·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대구광역시 수성구
    ※ 과거 당첨사실 조회 방법 :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따라 금융결제원 주택 청약서비스(www.apt2you.com) 또는 KB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신청자, 배우자 및 세대원 각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별도로 각각 검색하여야 합니다.
-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18.12.13.)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납입기간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당첨일로부터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1. 수도권 1년 / 2. 수도권 외의 지역 6개월(다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으로 한다) / 3. 제1호 및 제2호의 지역 중 위축지역 3개월
-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세대주 자격을 갖춘 청약자(배우자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가 각각 청약하여 당첨되는 경우 모두 재당첨제한 위반에 따른 부적격당첨자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아파트로 향후 주택시장 변동에 따라 아파트 가격이 변동될 수 있으니 청약 시 주의하시기 바라며,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제6항 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제한자로 관리되오니,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가점제 제한사항 : 가점제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년간 가점제에 의한 재당첨 제한(당첨자발표일이 2017.10.18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
- 전매제한 기간 – 본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시행령」 제73조에 의거 최초로 주택공급 계약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5년을 초과하는 경우 5년으로 한다)까지 전매가 금지되며 특별공급으로 공급된 주택은 5년간 전매가 금지됩니다(단, 향후 「주택법」 및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의 청약자격이 개정되었으니 청약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무주택군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유주택자도 청약 가능) - 입주자저축 1년이상 가입자 → 본 주택의 해당순위(1순위 및 2순위)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시 청약 가능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4조 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본아파트에 청약할 때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봅니다.
- 노약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각호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2018.12.13.)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자,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간 동안에 체결하며,대한민국 이외의 국적인 자가 분양을 받을 경우 「외국인토지법 시행령」 제3조규정에 의거 외국인 토지취득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투기 적발자 처벌(「주택법」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불법 행위 여부 확인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법 위반 여부 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 성남시 분당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내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인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 조달 계획 및 입주계획서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성남시 분당구는 투기과열지구로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제한이 적용됩니다. 본 아파트의 중도금대출은 사업주체가 금융기관에 대출이자를 우선 대납하고 향후 수분양자가 사업주체에게 일시에 이자를 납부하는 이자후불제이나 관련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및 자격가능여부 등으로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사업주체에게 책임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무주택세대 : LTV(40%), DTI(40%) / 1주택(분양권·입주권 포함) 보유 세대는 원칙적으로 금지[2년 이내 기존주택 처분 조건 등 예외 허용 사유 LTV(40%), DTI(40%)] / 2주택(분양권·입주권 포함)이상 보유세대는 주택담보대출 금지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보증(9억원 이하 주택)을 세대당 1건으로 강화
-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분양안내 홈페이지(www.prugio.com)를 운영하므로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견본주택 관람이 가능합니다. 단, 홈페이지만을 관람하고 청약시, 경우에 따라서 판단의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기간 동안 실제 견본주택을 방문해 확인하여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착오에 따른 불이익 발생 시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시행위탁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청약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 당첨 시 당첨일로부터 수도권의 경우 1년, 수도권 외의 지역의 경우 6개월(다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 위축지역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 불가
- 대출제한 및 전매금지, 가점제 재당첨 제한, 예비입주자 선정 등의 사항은 청약시점의 관계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계 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주택전시관 방문 신청'에서 '아파트투유(www.apt2you.com)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주택전시관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분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일반 1순위 (당해지역-성남시1년이상 거주자)	일반 1순위 (기타지역-성남시 1년미만,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일반 2순위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일정	2018년 12월 24일(월)	2018년 12월 26일(수)	2018년 12월 27일(목)	2018년 12월 28일(금)	2019년 1월 4일(금)	2019년 1월 15일(화) ~ 18일(금)
방법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개별조회 (www.apt2you.com 로그인후 조회 가능)	—
장소	• 금융결제원(www.apt2you.com)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특별공급 청약신청은 PC에서만 가능	• 금융결제원 (국민은행외 청약통장 가입자) – PC : www.apt2you.com – 스마트폰 : APT2you 앱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 PC : www.kbstar.com – 스마트폰 : KB스타뱅킹 앱	• 금융결제원 (국민은행외 청약통장 가입자) – PC : www.apt2you.com – 스마트폰 : APT2you 앱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 PC : www.kbstar.com – 스마트폰 : KB스타뱅킹 앱	• 금융결제원 (국민은행외 청약통장 가입자) – PC : www.apt2you.com – 스마트폰 : APT2you 앱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 PC : www.kbstar.com – 스마트폰 : KB스타뱅킹 앱	• 금융결제원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PC : www.apt2you.com – 스마트폰 : APT2you 앱	당사 견본주택

※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요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성년자"란 「민법」에 따른 성년자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말하며, 이 경우 다음 각목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1599.3003